#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65

발의연월일: 2025. 2. 3.

발 의 자: 강득구·채현일·송재봉

박홍배 · 김문수 · 김기표

윤종오 • 서삼석 • 이학영

김성환 · 김남희 · 전종덕

이광희 • 맹성규 • 정동영

전재수 · 김준혁 · 박 정

김남근 · 김영환 · 김태선

의원(21인)

#### 제안이유

모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, 단결권 · 단체교섭권 ·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. 그러나 실제 노동현 장에서는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,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. 특히 청소년,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쉬움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,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

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나.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(안 제5조).
- 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를 거쳐 5년마 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라.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 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게 요청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 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(안 제8조).
- 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 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 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바.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

하여 「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」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
사.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등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
###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노동인권교육"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,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,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,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,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2. "학교 노동인권교육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 권교육을 말한다.
- 3. "사회 노동인권교육"이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「평생교육 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(이하 "평생교육기관"이라 한다) 등에서 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노동인권교육의 실시와 진흥에 관하여 다

-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·단시간근로자,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, 청소년·여성 근로자 및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(이하 "노동인권약자"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.
- 제5조(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노동인권교육의 정책방향
  - 2. 제6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
  - 3. 제7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
  - 4. 노동인권교육 업무의 협력·조정
  - 5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고용

노동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.

- 1. 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
- 2.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
-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)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1.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
  - 2.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  - 3.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·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・관리에 관한 사항
  - 5. 노동인권약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제7조(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, 절차와 방

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(학교 노동인권교육) ① 정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이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사회 노동인권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1.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- 2.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
- 3.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0조(노동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「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」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 과정,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,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 지원
  - 2.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
  - 3. 교육 시설·장비의 설치 및 활용
  - 4.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·단체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 지원
  - 5.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④ 노동인권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,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지정의 취소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
  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경우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업무의 위탁)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3조(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